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1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봉양순,
송경택, 신동원, 오금란,
유만희,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고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방문인력 종사자, 보육교직원,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장 방침이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이는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 2조)

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제 3조)

다. 부정 및 중복수급의 비용 환수를 규정함(제 4조)

라. 피해구제 안내를 규정함(제 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 17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관리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 노인 등과 집단시설 또는 다수와 밀접 접촉하여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나.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다.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문인력

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2.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비용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제5조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각종 문서 등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¹⁾**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부서별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부 기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육교직원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 예 산 : 35,491,060천원(예방접종 지원금액 포함)
- 참고문서 :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② 장기요양요원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 예 산 : 5,652,843천원(어르신돌봄종사자 무료 독감예방 접종비 1,300,000천원 포함)

③ 방문인력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 예 산 : 1,030,731천원(예방접종 지원금액 포함)
- 참고문서 : 「2025년 방문인력 예방접종 등 안전지원계획」

④ 아이돌보미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년 <아이돌봄 지원(자체)>
- 예 산 : 6,767,630천원(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 133,000천원 포함)